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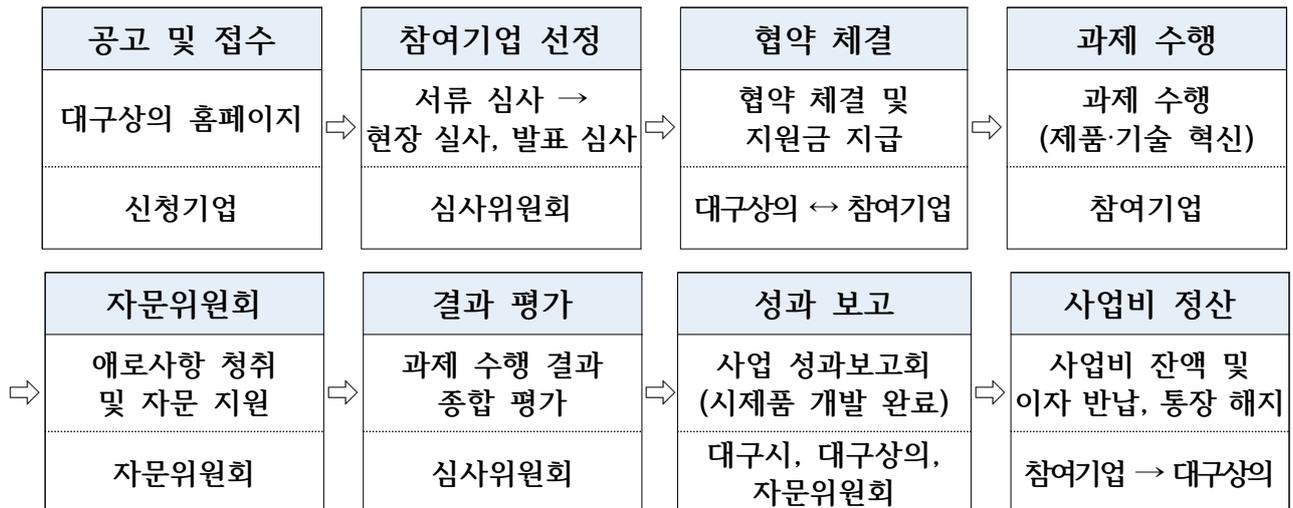
4. 지원규모 : 10개사 내외

5. 지원내용

- (제품혁신) 과제개발비용(시제품 제작경비 등) 지원을 통해 신규제품 개발 및 기존 제품의 품질 향상
- (기술개발) 맞춤형 컨설팅, 기술애로 해결, 기존기술의 고도화,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

구 분	내 용	시보조금	민간분담금
제품기술 혁신 과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건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대표자 및 기존 인력에 한해 현물로만 계상 ○ 연구장비·재료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연구시설·장비비(임차료) · 시약재료 구입비 · 시제품 제작 경비 ○ 위탁개발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시험 성적 비용, 인증 획득 비용 등 · 위탁기관 : 대학, 연구원(소), 대·중소기업 등 · 단순 외주용역이 아닌 과제의 일부를 위탁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개념의 사업비로서 현물출자는 인정되지 않음 ○ 지식재산 권리화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 출원 비용 · 최대 150만원까지 계상 	10,000천원 또는 13,000천원	20% (현금 10%, 현물 10%)

6. 추진절차



※ 내부사정에 따라 상기 절차가 변동될 수 있음

※ 참여기업 선정 후 협약체결 전 ‘사업계획서 심의결과’ 에 따라 지원금이 변동될 수 있음

II. 참여기업 선정

1. 선정방법

- 선정방법 : 심사위원회를 통해 서류심사 점수와 현장 및 발표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으로부터 10개사 선정
 ※ 단, 합산점수가 80점 미만일 경우 탈락
- 심사위원 : 주관기관, 외부 전문위원(교수, 분야별 전문가) 등 5명 내외

2. 1차 심사 : 서류심사

- 신청업체 대상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최고점으로부터 1.5배수(15개사) 선정
 ※ 단, 심사위원회를 통해 현장 실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 선정 가능

3. 2차 심사 : 현장실사 및 발표심사

- 서류심사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 및 발표심사 실시
- 현장(발표)심사 : 현장 점검 및 대표자 인터뷰
 사업 계획 발표 및 심사위원 질의·응답

4. 심사기준

구분	항 목	배점	내 용	
1차 심사	서류 심사	제품기술 적합성	20	제품화 적합성, 기존 제품 및 기술 대비 혁신성·차별성, 문제점 해결 가능성
		상품화 가능성	15	상품화 가능성, 시장 경쟁력
		예산의 구체성 및 적정성	10	사업비 구체성 및 적정성(필요성), 비중의 효율성
		5대 신산업 연계성	5	대구시 5대 신산업(미래모빌리티, ABB, 반도체, 로봇, 헬스케어) 분야와의 연계성 및 기술 고도화·사업화 연계 가능성 (해당 시 정책 연계 우대 평가)
2차 심사	발표 심사	사업계획 실현 가능성	20	제품 및 기술의 구체화 수준, 전담인력 및 추진여건의 적정성, 제품화 전략의 명확성
		지속 및 성장 가능성	15	시장성(수요·경쟁력), 제품군 형성 및 확장 가능성, 수익모델 적정성
		사업화 의지	15	사업 참여 의지, 대표자 및 기업의 사업화 추진 의지와 실행 의지

※ 대구시 5대 신산업 분야와의 연계성이 우수한 과제는 서류심사 시 가점을 부여함

Ⅲ. 신청안내

1. 신청기간 : 2026. 2. 9(월) ~ 2. 25(수) 15:00까지

2. 신청방법

①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
(www.dcci.co.kr) 공지사항



② 2026년도 사업 공고문 클릭



③ 첨부파일 다운로드 하기

④ 신청서류 첨부 및 제출하기 클릭

3.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
1	사업신청서 및 기타서류
2	사업계획서
3	자격요건 증빙서류 (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창업기업확인서, 주업종코드확인서,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, 납세증명서, 지방세 납세증명서, 사업자등록증)

IV. 기타사항

1. 문 의 처

- 담 당 자 : 대구상공회의소 R&D지원팀
- 전화번호 : 053-222-3084
- 주 소 :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, 6층

2. 유의사항

- ※ 공고된 사업에 대한 업무처리방법, 사업내용 및 지원금은 대구상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※ 보조금 부정 수급 시 지원예산은 환수 조치하며, 관련자는 민.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
- ※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< 지원 제한 기업 >

- 주업종코드 확인서 기준 주업태가 제조업이 아닌 기업, 부업태만 제조업인 기업은 지원 불가(제외대상은 '주업종코드(주업태) 제한' 자료참고)
- 한국표준산업분류(11차) 기준 기준 25개 제조업종 중 자본집약도가 높은 6개 업종을 제외한 19개 업종만 지원 가능(제외업종은 '업종제한' 자료참고)
- 동일 기업은 본 사업에 최대 2회까지만 지원 가능하며, 지원횟수 산정은 본 사업의 기존 참여 이력을 기준으로 함
-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, 대위변제, 대지급, 부도, 관련인, 금융질서문란, 화의, 법정관리, 기업회생신청,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
-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하거나 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업
-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- 당해연도 사업에 대하여 타 정책자금 지원받은 기업
- 사업 지원 받은 후 사업완료보고서 미제출기업 신청 제한(1년간)
- 국제, 지방세, 4대 보험료 등 체납업체
- 기타 사업 주관기관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지원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체

- 붙임 1. 사업신청서 및 기타서류 1부.
- 2. 사업계획서 1부. 끝.

[참고]

지원자격 주업종코드(주업태) 제한

○ 기 준 : 주업종코드 확인서 기준 제조업

- 주업태명 : 제조업

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상세안내

사업자 검색

사업자등록사항 상세화면 도움말

상호	<input type="text"/>	성명(대표자)	<input type="text"/>	개업일자	<input type="text"/>
주업종코드	293002 <input type="text"/> 부업종코드	주업태명	제조업	주종목명	미용기기(293002)
사업자구분	일반과세자	총괄납부번호		사업자단위과세여부	부
원천징수구분	6개월납	개별소비세구분	해당없음	의제주류면허	해당없음
동업기업여부	<input type="radio"/> 여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부	사업자상태	계속사업자		

○ 자격제한 : 주업태가 제조업이 아닌 기업(부업태만 제조업인 경우 포함) 지원 불가

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상세안내

사업자 검색

사업자등록사항 상세화면 도움말

상호	<input type="text"/>	성명(대표자)	<input type="text"/>	개업일자	<input type="text"/>
주업종코드	552104 <input type="text"/> 부업종코드	주업태명	음식점업	주종목명	커피업(552104)
사업자구분	일반과세자	총괄납부번호		사업자단위과세여부	부
원천징수구분	월납	개별소비세구분	해당없음	의제주류면허	주류면허
동업기업여부	<input type="radio"/> 여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부	사업자상태	계속사업자		

부업종코드 정보 내역

일련번호	부업종 등록일자	부업종코드	부업태명	부종목명
1	2023-09-11	154901	제조업	식품제조 커피

« 맨처음 < 이전 1 다음 » 맨뒤로 » 총1건(1/1)

[참고]

지원자격 업종제한

○ 기 준 :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

- 대 분 류 : 제조업(C)
- 중 분 류 : 25개 업종(10~34)

○ 업종제한 : 자본집약도가 높은 6개 업종은 지원 불가

※ 제한업종 : **담배제조업(12), 코크스·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(19),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(21),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(30),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(31),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(34)**

코드	중분류	코드	중분류
10	식품 제조업	23	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
11	음료 제조업	24	1차 금속 제조업
12	담배 제조업	25	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; 기계 및 가구 제외
13	섬유제품 제조업; 의복제외	26	전자 부품·컴퓨터·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
14	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27	의료, 정밀·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
15	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28	전기장비 제조업
16	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; 가구 제외	29	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
17	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30	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
18	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31	기타 운송장비 제조업
19	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32	가구 제조업
20	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; 의약품 제외	33	기타 제품 제조업
21	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34	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
22	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	-